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8.29.>

소독 명령서

제 2023-24 호

시설	시설명 관내 시설출입차량							
	소재지							
소유자 (관리자)	성명				생년월일			
	주소				전화번호			
명령의 내용	명령의 구분 소독				명령의 이유 소 농장 내 구제역 유입 및 발생 방지			
	이행장소 충북(청주 · 증평 · 음성 · 진천 · 괴산 · 보은), 충남(천안), 세종, 대전				이행기간 '23. 5. 19. ~ 방역지역 전부 해제 시		대상 두수	
명령대상	가축	축종	품종	성별	연령	귀표(개체) 번호	특징	비고
	사람	관내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						
	차량	관내 시설출입차량						
준수사항	해당 지역 외(내)부에서 대상지역 내(외)부의 소 농장으로 생축(소) 반입 · 반출 금지(단,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반출은 예외 적용)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소 농장 및 소 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,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.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,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, 소 농장 방문 시 소 농장의 소유자 · 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. 생축 · 분뇨 운송 차량은 소 농장에서 다른 소 농장, 도축장 또는 분뇨업체로 갈 경우,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,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							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를 명합니다.

2023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유의사항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른 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